

덤픽수입품으로부터의 대응방안

글 · 김창훈 공인회계사
태영회계법인 국제통상팀

I. 서문

일반인들에게 “덤픽”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로 “싸다” 혹은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규모의 영세업체들에게 “덤픽”의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생존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십수년전 우리는 시내 곳곳에서 또 지하철내에서 앨범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하면서, “덤픽 때문에 미국수출길이 막혀 창고에 앨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를 하던 판매원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분들은 미국에 앨범을 수출 하다가 미국 앨범업체들의 반덤핑제소에 휘말려 수출이 막힌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적지 않은 한국의 피해소업체들, 즉 앨범업체들이 도산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덤픽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를 상대로 외국의 덤픽물품이 밀려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덤픽수출로 인하여 수출길이 막히는 피해를 보고, 반대의 경우 덤픽수입품으로 인하여 내수판매가 격감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덤픽으로 인한 이중피해를 보게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음을 알게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의 생산자 혹은 생산자단체는 미국상무성(DOC)의 반덤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외국의 덤픽수입품을 적절히 막아냈기 때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자원부가 밝힌 2001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반덤핑피소국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리를 반덤핑 협의로 제소한 건은 전체 10건으로 전체반덤핑제소건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똑같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가지고 있으 면서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 과로 덤핑수입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업체들 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덤핑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업체들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본문

1.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현황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 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 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 는 제도로 WTO에 의하여 정식으로 인정되어 세계의 주요국가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 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반덤핑관세제 도, 상계관세제도 및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불공정수출입행위조사제도를 추가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라 칭하기도 하는데, 불공정수 출입행위조사제도 자체는 WTO 협정에 공식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국내법령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좁 은 의미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앞서 언급한 3가 지 제도만을 지칭한다.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가. 반덤핑제도

반덤핑제도라 함은 특정 수입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 우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팡물품에 대하여 특별관 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 도이다. 앞서 언급했던 앨범의 예에서 언급한 제 도가 바로 이 제도이다.

나.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라 함은 수출국이 수출상품을 생 산하는 산업 또는 특정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 조금을 지급하여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 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 국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하여 고 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제도이다.

다. 긴급수입제한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라 함은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 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급증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를 취하 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중국산 마늘파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에 취하였던 조치로 흔히 “세이프가드(Safeguards)로 알려져 있다.

3. 반덤핑관세제도

이하에서는 상기 3가지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소요건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수입물품 가격이 수출자의 국내시장가격의 정상가격보다 싸게파는 덤픽판매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동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실질적 피해우려 및 국내산업의 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위 두가지 요건이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덤픽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덤픽물품의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여 더 이상 찾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국제유가 등 원재료가격이 상승하여 채산성이 떨어진 경우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동 피해원인이 덤픽수입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 제소자격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제소자격은 무분별한 제소를 통한 국내소비자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

여 엄격히 법제화되어 있다.

(1) 국내생산자

이때 국내생산자라 함은 제소신청시 찬성 혹은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당해 생산자 중 신청서 접수일이전 6월 이내 덤픽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생산자는 정상적인 국내생산자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순수국내생산자를 위하여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3)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장관

다. 조사신청방법

상기의 제소자격을 갖춘 조사신청인(혹은 선임된 대리인)은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조사신청서에 영업상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업상비밀자료임을 표기하면 해당기업의 비밀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등 일정한 정보보호절차를 취하고 있다.

라. 대리인의 선임여부

반덤핑제소의 제소부터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픽방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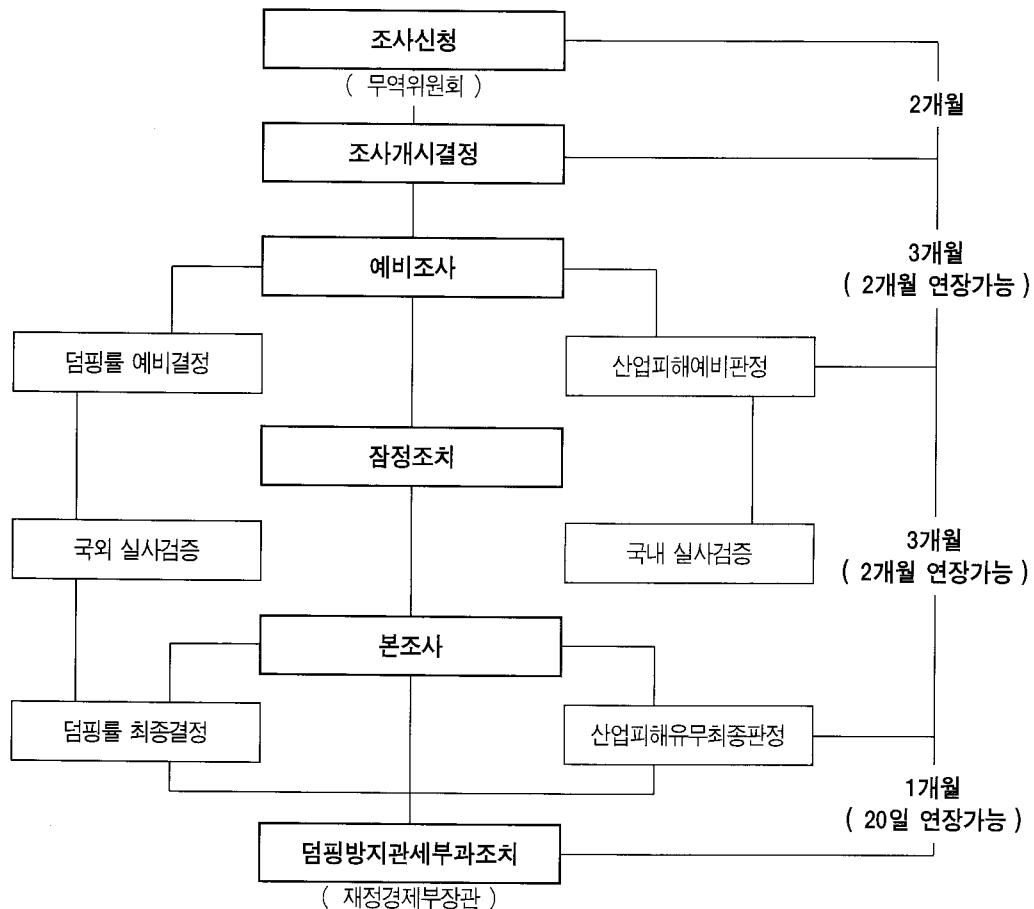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기간상으로는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무역위원회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업체들은 통상 반덤핑제소 자체가 생소하므로 원활한 제소 진행을 위하여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반덤핑제소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들 대리인은 제소에 관련한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제소 각 단계별로 제소자에게는 생소하여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

요한 사안에 대하여 경험자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제소를 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독립한 제3자로서 앞서 언급한 영업상비밀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마. 반덤핑방지관세의 진행절차

반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별 기한연장이 없을 때 전체 소요 기일은 9개월이 예상된다.

<<< 덤프방지관세의 조사 절차도 >>>



III.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하여 반덤핑관세제도를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WTO 경제구도하에서 적어도 산업계에서는 더 이상 국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해외에 있는 경쟁업체의 움직임과 현지국의 가격동향은 곧 바로 국내시장의 수출가격 및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국내 생산자들은 수입품의 가격과 물량의 동향을 하시 예의 주시하여 WTO와 국내법에서 인정한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국내에서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는 분명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소를 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관

련한 상담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제3자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판부가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부추겨서 소송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재판부는 주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협의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할 뿐이다. 분명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의 권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구이지만 어느 일방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WTO의 정신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차후 상대국의 유사한 보복조치로 인하여 반대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덤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소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그 절차를 대행할 뿐이라는 점이다.

협소한 지면관계상 짧은 내용속에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지만, 덤픽수입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자체의 존재 사실도 모르는 기업들이 있다면,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017-225-0501)